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1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 박정하·김종양·이만희

이인선 · 신성범 · 한지아

박성민 · 신동욱 · 서명옥

김장겸 • 조은희 • 박대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 는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음.

그런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.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출산 및 양육 지원을	제22조의2(출산 및 양육 지원을
위한 감면) ① 18세 미만의	위한 감면) ①
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	
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	
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	
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	
포함하지 아니한다) 3명 이상	
을 양육하는 자(이하 이 조에	
서 "다자녀 양육자"라 한다)가	
양육을 목적으로 <u>2024년 12월</u>	<u>2029년 12월</u>
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	31일까지
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(자동	
차의 종류 구분은 「자동차관	
리법」 제3조에 따른다) 중 먼	
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	
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, 제1호	
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	
「지방세법」 제12조제1항제2	
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	
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	
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	
경감한다. 다만, 다자녀 양육자	

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(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한정한다)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~ 4. (생략)
-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.
- 1. ~ 3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2
<u>2029년 12월 31일까지</u>
,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